

공업기술연구소 규정

제 1 장 총 칙

- 제 1조 (명칭)** 본 연구소는 호서대학교 부설 공업기술연구소(이하 “연구소”라 한다)라 칭한다.
- 제 2조 (목적)** 본 연구소는 공업 분야에 관한 기술을 연구 개발하여 국가의 경제발전과 공업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 3조 (위치)** 본 연구소는 호서대학교 안에 둔다. (신설 2015.09.01)
- 제 4조 (사업내용)** 본 연구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. (개정 2015.09.01)
1. 외부로부터 위촉된 연구조사
 2. 저명한 국내외 학자의 초빙 및 국내외 장학
 3. 간행물의 발간, 연구회, 발표회, 강연회 및 강습회 개최
 4. 기타 본 연구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

제 2 장 조 직

- 제 5조 (연구부)** 본 연구소에 다음 6개의 연구부를 두고 연구 분야별 사업을 분장한다.(개정 2015.09.01)
1. 기계 및 재료 연구부
 2. 전기 및 전자 연구부
 3. 정보기술 및 문화 연구부
 4. 환경, 소방 및 안전 연구부
 5. 토목 및 건축 연구부
 6. 공학교육 연구부
- 제 6조 (임원)** 본 연구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. (개정 2015.09.01)
1. 소장
 2. 부소장
 3. 고문 : 약간 명
 4. 감사 : 2명
 5. 운영위원 : 약간 명
- 제 7조 (구성)** 본 연구소에 소장과 부소장을 둔다. (개정 2015.09.01)
- 제 8조 (소장)** ① 본 연구소의 소장은 총장이 본 대학 전임교원 중에서 임명한다.(개정 2015.09.01)
- ②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여 연구, 인사, 경리, 기타 일체의 사무를 관장한다.
(개정 2015.09.01)
- 제 9조 (부소장)** 부소장은 부학장을 당연직으로 하며, 소장의 임무를 보좌한다. (개정 2015.09.01)
- 제10조 (감사)** ① 감사는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하며,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(신설 2015.09.01)
- ② 감사는 매년 2월말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운영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특정한 목적에 따라 특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. (신설 2015.09.01)
- ③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. (신설 2015.09.01)
1. 연구소의 당해 연도 예·결산
 2. 연구소 당해 연도 사업의 타당성
 3. 기타 운영위원회 의결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항

제11조 (운영위원) 운영위원은 연구소 소속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(신설 2015.09.01)

제 3 장 운영위원회

제12조 (회의) ① 연구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 (신설 2015.09.01)

② 운영위원회는 소장이 매년 1회 이를 소집하고 필요시에는 수시로 이를 소집할 수 있으며 그 의장이 된다. (개정 2015.09.01)

③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한다. (신설 2015.09.01)

1. 주요 사업계획 및 운영방법
2. 예산 및 결산
3. 규정 개정 발의
4. 기타 연구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

④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되고 위원회의 의사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. (개정 2015.09.01)

⑤ 운영위원회는 반드시 회의록을 작성하고, 참석한 운영위원의 날인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. (신설 2015.09.01)

제 4 장 재 정

제13조 (재정) 본 연구소의 재정은 본교의 연구보조금과 기부금 및 사업수익금으로 충당한다.

제14조 (회계연도) 본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본교의 회계연도와 같다.

제 5 장 폐 소

제15조 (폐소) 본 연구소가 폐소할 때에는 잔여 재산을 본교에 귀속시킨다. (신설 2015.09.01)

제 6 장 보 고

제16조 (보고) 연구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해진 기한 내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이때 보고는 연구소 관리부서에 제출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. (신설 2015.09.01)

1. 연구소 운영실적보고서 - 다음해 3월말까지
(해당 학년도 연구비 수혜상황 및 연구실적 총괄표 포함)
2. 매 회계연도 결산서 - 다음해 3월말까지
3. 신년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-1월말까지
4. 기타 연구소와 관련된 자료

제 7 장 보 칙

제17조 (준용) 연구소의 운영과 관련하여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내용은 대학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.(신설 2015.09.01)

제18조 (운영세칙) 기타 연구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.(신설 2015.09.01)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198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198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① 이 규정 공포와 동시에 종전의 공업기술연구소 규정은 폐지한다.

② 이 규정 시행일 이전의 연구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.